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53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53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152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변론 종결 2021. 7. 16.

판결 선고 2021. 8.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152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의 2017. 7. 2. 100만 원, 2017. 7. 31. 106만 원, 2017. 9. 30. 106만 원, 2017. 10. 31. 107만 원, 2017. 12. 4. 106만 원, 2018. 1. 2. 106만 원, 2018. 1. 31. 145만 원, 2018. 4. 4. 291만 원, 2018. 5. 4. 145만 원, 2018. 7. 25. 268만 원, 2018. 8. 25. 267만 원, 2018. 9. 21. 273만 원, 2018. 10. 25. 267만 9,000원, 2018. 11. 24. 267만 원, 2018. 12. 25. 548만 원, 2019. 1. 22. 43만 원, 2019. 1. 29. 300만 원, 2019. 2. 25. 300만 원, 2019. 3. 27. 3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5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3 내지 7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준서

판사강희석

판사오연정